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변화된미래를만드는이혼모협회 인트리 / 빈곤사회연대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인우회 / 한국전부모연합

후원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일시

2022.09.28. 수요일
10AM-12PM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03

목 차

■ 개최사

----- 4

- 발제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 사회현실 반영과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_이민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6

- 발제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협소한 ‘가족’ 규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법으로

_이근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팀/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변호사)

----- 35

- 토론1. 건강가정기본법-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배제와 소외 없는 보편적 가족정
책을 위한 기본법으로 재탄생해야

_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62

- 토론2. 혈연/제도적/이성애규범적 가족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없는 법개정의 한계
_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 67

- 토론3. 토론문: 가족. 선택하고 돌볼 권리

_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73

■ 토론4.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_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조사관)

----- 82

■ 토론5. 사회의 시선으로 살 것인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인가?

_장희정((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

----- 86

■ 토론6. 동성부부로서 경험하는 차별 사례

_소성욱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 90

■ 토론7.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가족의 범위

_박진욱((사)나눔과나눔 상임이사)

----- 93

개 최 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가족범위 확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다시 퇴보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법적 가족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미 10명 중 7명의 국민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을 오히려 철회함으로써 소모적 논쟁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여가부입니다.

'건강 가정' 용어 변경 철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이기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지 오래입니다. 굳이 입장을 번복해서 낡고 차별적인 '건강 가정' 용어를 유지하겠다는 여가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천명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변화된 사회에 맞춰 가족의 법적 개념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혼인·혈연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낡은 가족 관점은 돌봄, 노동,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왔습니다. 부모와 자녀 둘을 기준으로 한 4인 정상 가족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한 명의 개개인을 사회 최소 단위로 바라보

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가부는 '전 정부 지우기'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살고 싶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목하는 기본소득과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은 기본소득당이 꾸준히 제안해온 미래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여성가족부의 퇴보를 막고 우리가 꿈꿔 온 미래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날 국회에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논의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가족구성권 논의를 넓히기 위해 애써주셨던 분들이 오늘의 토론회에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한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의 논의를 경청하며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향한 요구가 꺾이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제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 사회 현실 반영과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이민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목차

I. 들어가며

II. 가족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 현실

1. '정상가족' 중심 사회 구조의 문제

- 1) 혼인·혈연 기준의 가족단위 제도 운영
- 2) 혼인·혈연 가족에 맡겨진 돌봄

2. 인구·가족구조의 변동과 다양한 가족 실천의 가시화

- 1) 한국사회 인구·가족구조의 변동과 가족 인식의 변화
- 2) 다양한 가족 및 친밀한 공동체 형성의 요구

III.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으로 인한 법·제도·문화적 차별 실태

1. 제도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함에서 비롯하는 차별

- 1) 공동생활 및 상호부양 관계의 불인정
- 2) 돌봄과 애도의 권리 박탈
- 3) 공동재산 형성과 상속의 권리로부터 배제

2. '법적 가족' 중심 제도 설계와 운영으로 인한 차별

- 1) 주택 공급 제도에서의 배제와 불이익
- 2) 복지와 행정 제도에서의 소외

3. 혼인·혈연 중심 가족 관념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

- 1) 민간 제도에서의 배제와 차별
- 2) 혼인·혈연관계를 우선하는 관행으로 인한 소외
- 3) '정상가족' 통념에 의한 혐오

IV. 나가며

1. 들어가며

21대 국회에서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중립적 표현으로서 “가족지원”, “가족정책”으로 변경하고, 제3조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며, 가족 형태와 상황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규정을 개선하기를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발표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제3조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가족에 관한 개념과 제 문제, 지원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은 제1장 제3조 1항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 측면은 법률이 특정한 가족의 형태를 규범적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담론적 효과의 문제이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가족의 요건을 혼인·혈연·입양이라는 제한적 관계로 설정하는 법규와 이에 준하여 수립·운영되는 정책이 야기하는 제도적 차별의 문제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 현황과 한계점을 진단하고, 대안으로서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 체계 구축, 모두에게 적절한 삶이 보장되는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다양성에 관한 전 사회적 인식의 합의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로 법적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기초한 ‘정상가족’ 관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현실에서 가족과 관련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변화는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하였다. 이에 2022년 한 해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을 넓히고,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 실천을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문화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업 ‘똑딱똑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를 진행하였다.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가족 관련 인식과 혼인·혈연 중심 법적 가족 규정으로

인한 제도적 차별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대중 설문조사와 주제별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본 발표문에 인용된 사례는 다음의 설문조사와 집담회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1. 주 분석자료

1) 온라인 설문조사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 설문 목적: ①가족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을 수집 ②가족 형태에 따른 제도적 차별의 실태 파악
- 설문 일정: 2022.05.25.~2022.06.15.
- 설문 대상: 설문대상: 법적가족(혼인·혈연·입양)이 아닌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사람, 또는 가족 관념의 확장을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
- 설문 내용: 가족의 구성 요건에 관한 인식, 가족 상황과 실천 현황, 가족 관련 경험과 계획, '법적 가족' 중심 법률과 제도로 인한 차별 경험 등
- 참여 인원: 153명

2) 대중 집담회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 집담회 목적: 협소한 기준의 법적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제도 아래서 살아가는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고, 더 보편적이고 평등한 가족 제도를 위한 변화와 조건들을 상상해보고자 함.
- 회차별 정보:
 - ① 1회차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대상: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 사람들
일정: 6/22(수) 19:30
열쇳말: 선택가족/생활동반자법/법제도상 가족 규정/가족의 법제도적 권리/상속/장례/혼인
참석인원: 7명
 - ② 2회차 “우리도 같이 좋은 집 구하고 싶다!”
대상: 법적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일정: 6/24(금) 19:30

열쇳말: 동거가족/주거공동체/공동명의/공공임대/집대출/주거급여/평수제한/주택청약

참석인원: 7명

③ 3회차 "서로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대상: 법적가족이 아닌 사람과 돌봄을 나눈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일정: 6/29(수) 19:30

열쇳말: 돌봄공동체/네트워크가족/돌봄권/보호자 자격/가족돌봄휴가/출산육아 휴직

참석 인원: 10명

2. 보조 분석자료

1) 온라인 설문조사 <내 직장의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

- 설문 목적: 직장 내규 및 복리후생 제도에서 가족과 관련한 차별 사례와 평등한 대안 사례를 발굴하기 위함.
- 설문 일정: 2022.04.13.~2022.05.08
- 설문 내용: 가족 인식, 가족 구성, 직장의 가족 관련 내규 및 복리후생 제도 현황과 그로 인한 차별 경험 등
- 참여 인원: 129명

2)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 <내 '가족' 앞에서 멈춘 복리후생>

- 집담회 목적: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 내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대안적 직장 내규 안을 만들어 봄.
- 일정: 2022.05.18.
- 내용: 직장 내규 및 복리후생 제도 중 가부장적·성차별적 규정과 가족 형태에 의한 차별 사례 등
- 참여 인원: 11명

II. 가족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 현실

1. '정상가족' 중심 사회 구조의 문제

1) 혼인·혈연 기준의 가족단위 제도 운영

한국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을 설계함에 있어, 가족 관념의 확장에 관한 논의는 핵심적인 의제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제도 전반이 가족을 기준으로 짜여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 제도의 운영이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생계부양자 남성과 돌봄자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 그리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이성애 핵가족을 사회 제도 운영의 기본 단위로 상정하는 근대 산업사회 구조의 정상가족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상가족주의는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생계를 보조하고 돌봄과 재생산을 담당할 것이라는 불평등한 성별분업을 전제한다. 정상가족주의에 기초한 사회 제도의 운영은 이 같은 성별분업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 또한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을 돌봄 책임이 없는 ‘기준노동자’, 남성 임금노동자 ‘가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이 아니거나 통념상 ‘정상가족’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소외를 야기한다.

정상가족주의에 기반하여 가족을 정의하고, 이러한 가족을 단위로 설계 및 운영되는 정책은 복지, 노동, 주거 등 모든 사회 제도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정상가족’ 중심 제도는 시민들의 다양한 실제 삶의 양상을 파악하고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정의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개선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복지 체계는 상호부양과 돌봄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하고,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잔여 영역만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그래서 가구를 기준으로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가구란 혈연·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요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난다. 해당 제도에서 가구의 요건은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에 포함된다. 여기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설정하는 부양의무자기준도 생계급여 일부와 의료급여 수급 기준에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혈연·혼인 관계는 하나의 경제 단위이며, 서로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복지 제도는, 가구 구성원들 간의 실제 관계나 필요와 같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함께 사는 프리랜서 친구를 올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저는 부모님과 전혀 왕래하지 않는데도 부모님이 미납한 건강보험료는 대신 내고 있다는 거예요.

〈뚝뚝뚝뚝,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1회차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참여자 사례

가령 다양한 이유로 혼인·혈연가족과 절연하였거나, 가족 내 차별과 폭력 등을 겪고 있는 구성원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소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의 부담으로 인해 복지제도 이용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삶의 보장이라는 복지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도록 만든다.

2) 혼인·혈연 가족에 맡겨진 돌봄

거듭된 재난과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상존하던 문제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의 부재, 공적 돌봄 제도의 공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효율과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무한경쟁을 추동하는 지금의 체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을 돌보며 삶을 지속해갈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든

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극심한 불안과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적 돌봄이 부재한 상황에서 돌봄 영역에 배치된 이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주체는 가족이고 그 가족이란 혈연과 법률혼으로 구성된 관계라는 전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제도를 통해 보편적 돌봄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보다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수당 등 ‘법적 가족’에 한정된 가족 내 돌봄을 장려하는 방식의 대책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이는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을 배제하고, ‘법적 가족’ 내 차별을 존속시키며 돌봄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가족의 생계책임자로서 ‘기준 노동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생계보조자이자 돌봄 책임자라고 간주하는 통념이 더해지면서, 단축·유연근무제, 각종 돌봄 휴가·휴직 등 ‘일-가족 양립정책’은 가족 내 여성을 대상으로 수립되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돌봄이 가능한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갑자기 아팠을 때 누구에게도 돌봄을 요청할 수 없어서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본가 부모님께 연락한 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받지 못했지만. 아플 때 스스로 택시를 불러 병원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동거하는 사람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막막해서... 이렇다 할 계획은 없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5. 돌봄이 필요했던 경험 문항 답변

결국 계속 혼인·혈연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돌봄권 보장을 위한 공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돌봄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혼인율이 감소하고, 일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 안에서 더욱 그러하다.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이미 서로 돌보고 있는 관계들을 공식화하고 지지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인구·가족구조의 변동과 다양한 가족 실천의 가시화

1) 한국사회 인구·가족구조의 변동과 가족 인식의 변화

비혼과 만혼 추세가 이어지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그 어느 사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3.8건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각각 31.08세, 33.35세로 10년 전보다 1.67세, 1.22세 늘어났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또한 0.80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가구 구조를 보면, 2021년에는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63.9%에 달한다. 4인 세대 이상은 19.0%로, 그 비중이 급감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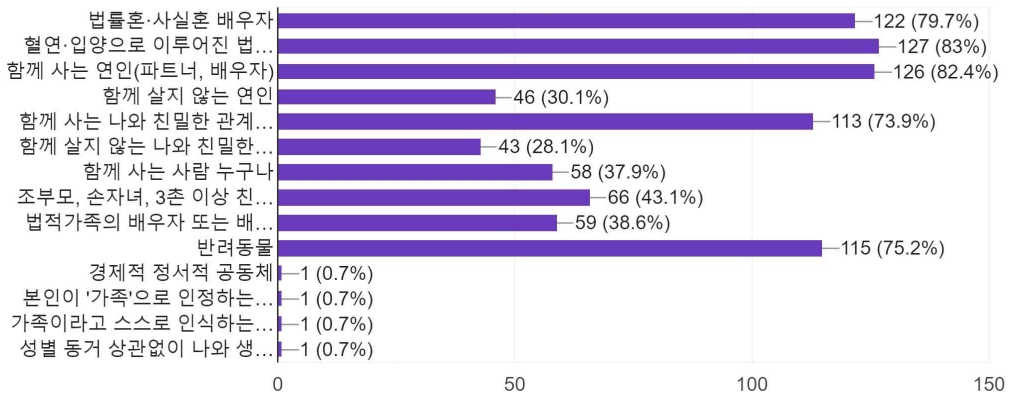
이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이성애 핵가족 형태라는 통념상 '정상가족'은 통계적으로도 더 이상 다수일반으로 볼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정상가족' 기준의 제도 설계와 운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가족 관념도 전통적인 혈연·혼인 관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가족 구성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은 통계조사 지표로도 드러난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에 그쳤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에 응답자의 반수를

홀쩍 넘는 69.7%가 동의하였다. 비혼, 이혼·재혼,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국제결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해당 조사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응답자의 70.5%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¹⁾

1. '가족'이라는 관계에 어디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중복 선택 가능)

응답 153개



[그림1]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 '가족'이라는 관계에 어디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항 답변 통계

본회에서 실시한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에서는 가족 인식에 관한 질문으로 '가족'이라는 관계에 어떤 관계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림1]의 통계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은 가족의 요건으로 기존의 혈연·혼인 관계에 더해 동거 여부, 친밀성, 생활의 공유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153건의 크지 않은 표본 안에서 도 같은 답변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는 각자의 실제 가족 구성 상황이나 지향을 반영하여 답변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가족에 관한 사회적으로 합의

1) 조유빈기자, 국민 인식 속 '가족'의 틀 확대됐다, 시사저널, 2020.07.0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85>

된 정의를 만들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저는 꼭 혼인과 혈연관계에 얽혀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거기에 얽매어서 더 불평등한 관계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요. 원가족, 혈연관계보다 더 건강한 방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권리들을 부여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똑똑똑,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1회차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참여자 사례

이처럼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확장된 현실에서, 법에 규정한 특정한 형태의 가족에게만 제도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체제가 유지된다면 누군가는 그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애초에 법과 제도가 가족을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짓고 서열화할 당위가 과연 존재하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친구가 주택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완전히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오래 사귀던 연인이 있는데 원래 결혼할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도만 이렇지 않았으면 친구가 결혼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을 좁혀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똑똑똑,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1회차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참여자 사례

경직된 사회 제도는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혼인·혈연·입양 관계의 ‘가족’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책임과 권리, 혜택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관계 맺기를 위한 실천과 상상력을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다양한 가족 및 친밀한 공동체 형성의 요구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친밀한 공동체 형성의 요구 또한 두

드러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이미 일인가족, 비혼·동거가족, 비혼 공동체, 노년 돌봄 공동체, 네트워크 가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공동체를 이루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고 있다. 가부장적 구조 안에서 혈연·혼인 관계로 묶인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동등하게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 역시 존재한다. 사회불안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주거와 생활에서의 편의와 안전 등을 이유로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주거경제공동체를 꾸리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비친족 가구(친족이 아닌 이들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의 수는 1년 전(42만3459)보다 11.6% 늘어난 47만2660가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가구 수다. 비친족 가구원의 수는 101만 5천 100명으로, 5년 만에 74.0% 급증했다.

각자 원룸에서 살다가 ‘거실이 갖고 싶다’ 이러면서 집을 합치게 된 거였어요. 각자 살 때도 비슷한 동네에 살아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일상을 같이 나누고 있었던 친구들이어서 같이 살게 되었고.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2회차
“우리도 같이 좋은 집 구하고 싶다!” 참여자 사례

혈연가족과는 독립하여 새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부장제 내의 제도적 결혼은 원치 않으며 한 명 이상의 여성(애인 혹은 친구들)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어하우스 형태의 아파트가 생긴다면 입주해서 함께 살면서 개인 공간, 공동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같은 동네 내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며 서로 살피주고 싶습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8. 가족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문항 답변

본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집담회의 참여자 사례에서도 현재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가족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그렇게 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또는 공동체를 꾸리고자 하는 이유로 돌봄을 꼽고 있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

다!〉 설문에서 가족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을 때, 전체 116개 답변 중 35개 답변에서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사람들은 친밀한 이들과 필요할 때 서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긍정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항상 돌아가면서 누군가 아프거나 우울한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 공금 같은 걸 미리 모아놓고 그 사람이 회복될 동안 생계를 도와주기도 하고, 가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기도 하고. 또한 명이 수렁에 빠지면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밖을 안 나가게 되는데 여러 명이 함께 사니까 서로 끌고 나가주기도 하고.

〈뚝뚝뚝,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3회차
“서로 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참여자 사례

저희 동네 페미니스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때 돌봄단을 꾸리게 되었어요. 동거인이 있었지만 그가 돌봄을 전적으로 혼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네 페미니스트 그룹과 아픈 친구의 아주 오래된 친구들, 또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소모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당번 시스템으로 돌봄을 했어요.

〈뚝뚝뚝,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3회차
“서로 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참여자 사례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돌봄을 나누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담회에서는, 혈연·혼인 가족에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적 돌봄이 이루어질 때의 긍정적 사례가 드러났다. 공동체 내에서 돌봄이 분담됨에 따라 혈연·혼인 관계에 돌봄이 ‘독박’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이 친밀한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

Ⅲ.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으로 인한 법·제도·문화적 차별 실태

1. 제도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함에서 비롯하는 차별

법률상 가족 규정이 혼인·혈연·입양 관계에 한정하여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지 못하는 가족들은 그들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증명하고 인정받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각자가 꾸려가는 삶과 관계를 공적으로 드러내거나,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굴욕감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각종 복지와 사회안전망 제도 안에 온전히 편입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가족’ 밖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 ‘가족’과 함께 집을 얻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내 ‘가족’과 함께 이루고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내 ‘가족’이 사망해도 장례를 치를 권리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은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의 삶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1) 공동생활 및 상호부양 관계의 불인정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함께 살며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납세, 사회보험, 주거, 노동 등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 체제 안에 온전히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실정이다.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차별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납세와 사회보험, 주택 공급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에 있어 ‘법적 가족’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 가령 소득세 부과에 있

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최소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 대상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인적공제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한정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가입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정된다. 주택공급 청약제도에서 적용되는 부양가족 가점제 기준에서도, 부양가족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법적 가족’이 아니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가족임에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답변 中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4. 정부 복지 정책·서비스 이용에서 차별 경험 문항 답변

내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실제로 나와 파트너는 완전한 경제공동체임에도, 파트너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4. 정부 복지 정책·서비스 이용에서 차별 경험 문항 답변

본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집담회의 참여자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들이 경험하는 피해는 우선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과 그로 인해 증대되는 불안감이 컸다. 더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은 또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직접 마주하는 제도 중 가족을 호명하고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가족이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실감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은 이에 따른 분노와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법적 가족’이 아니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 현실적 조건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소유자인 친구가 공동체에서 나가기로 한다면 나는 이미 이 집을 공동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데 명의상으로는 제가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그 친구는 양도세를 내야하고. 이미 공동체로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서류상의 명의 변경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생기죠. 그런데 ‘법적 가족’이면 그런 데서 세금의 혜택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2회차
“우리도 같이 좋은 집 구하고 싶다!” 참여자 사례

친밀성에 기반하여 경제와 생활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관계를 제도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의 문제는, 단순히 이에 따른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 관계의 고유한 특성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틀 안에서의 예방과 해결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관계 내 불확실성이 가중되기도 한다.

2) 돌봄과 애도의 권리 박탈

가족 관계의 공적인 인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은, 가족 구성원에게 닥친 위기였다.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은 질병, 사고와 같이 서로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적절한 조력과 돌봄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차별을 실감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차별로, 의료와 돌봄의 현장 안에서 주 돌봄자로서 ‘보호자’나 ‘대리인’ 자격으로 ‘법적 가족’ 관계의 증명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계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로서 권리’로부터 배제당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시급하게 수술 동의서를 써야할 때,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동행하거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병실에 함께 머물러야 할 때, 진단서와 같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거나 의료·돌봄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가족’이 아닌 이들은 번번이 관계 증명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었다.

“‘법적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맨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곳에서 힘을 발휘해요. 진단서를 떼다거나 환자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와야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호스피스로 가는 상담을 할 때도 환자 본인이 못 움직이면 제가 대신 가야 하는데 가면 가족이어야 한다고, 네가 왜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동의서, 위임장 이런 걸 바리바리 싸 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3회차
“서로 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참여자 사례

파트너가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집 밖 출입이 아예 어려워짐에 따라 돌봄 경험 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어야하는데, 법적 가족이 아니라 약을 대신 탈 수 없었습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5. 가족 돌봄 경험 문항 답변

현행법 가운데 보호자 권리를 ‘법적 가족’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규정은 많지 않다. 가령 수술동의서의 경우, 「의료법」상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해당 규정을 ‘법적 가족’으로 해석 적용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문제는 가족 구성 등 관계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기에 발생한다. 제도의 공백 상황에서, 행정기관, 의료기관 등 돌봄 현장의 책임 주체들은 다양한 관계들을 인정하는데에 수세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의료, 주거와 생활, 복지제도, 노동, 더 나아가서는 장례까지 긴밀하게 얽혀있는 돌봄의 현장에서, ‘법적 가족’을 우선시하는 법률과 지침, 관행들이 언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다.

나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개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 권리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되게 무기력하고 슬프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3회차
“서로 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참여자 사례

이렇듯 돌봄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혈연·혼인 가족에 우선하는 서로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어렵게 증명하여야 하고, 때로는 그러한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은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에 따른 상시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공적인 관계 증명이 어려운 이 같은 현실에서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들에게 크나큰 불안은,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한 자의 “연고자”를 혈연·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고자에게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를 치를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매년 앞으로를 상상하고 계획하는데, 내가 죽으면 또는 내 연인이 죽으면 어떻게 챙겨줄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6. 재산·장례·상속 제도에서 차별 경험 문항 답변

내 장례식은 나보다 남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일상에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가족들이 다 결정하고 그래서 안 되는 자리인데, 결정 권한이 법적 가족에게 있잖아요.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1회차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참여자 사례

이에 따라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은 연고자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증명한다고 해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혈연·혼인 가족의 후순위로만 장례를 치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망자가 살아온 삶과 맺어온 관계가 제대로 존중될 수 없게 하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애도할 인도적인 요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서로에게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임에 혈연·혼인 관계라는 ‘자격’을 요구하는 현실은, ‘법적 가족’ 밖의 가족으로부터 정당한 돌봄과 애도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관계맺음에 있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3) 공동재산 형성과 상속의 권리로부터 배제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으로 삶을 설계하고 증진할 권리 역시 침해받고 있었다. 서로가 경제생활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 운영에 있어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법적 가족’ 관계에 주어지는 것에 비해 훨씬 협소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공동명의로는 보증자리론 등 대출을 안 해주어서 공동명의로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추후 금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라면 두 명의 합산소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겠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라 한명의 이름으로만 계약이 가능했고, 한명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되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봤습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1. 정부 주거 정책·서비스 이용에서 차별 경험 문항 답변

가령, 주택 구입을 위해 공동으로 대출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고, ‘법적 가족’이 아니면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 등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속권이 ‘법적 가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공무원인데 내가 죽으면 동거인(사실혼)에게 유족연금을 줄 수가 없음.

설문조사와 집담회의 참여자들은 갑자기 사망하게 됨으로써 사후에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다.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상속에서 서로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하여 합유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고민하고 있었다. 여기에 드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은 ‘법적 가족’이라면 들이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다.

2. ‘법적 가족’ 중심 제도 설계와 운영으로 인한 차별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 조사에서 ‘법적 가족’ 기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을 질문했다. 주거와 돌봄 등 영역의 각종 복지제도에서의 차별 경험을 묻는 객관식 문항에 대하여, ‘관련 제도 이용 경험 없음’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은 각종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일까? 상세한 경험을 묻는 주관식 답변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법적 가족’의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아서, ‘법적 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그 밖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분은 너무 작아서, 또는 그런 제도적 혜택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 제도에서 애초부터 배제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1) 주택 공급에서의 배제와 불이익

‘법적 가족’만을 제도의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주거 영역이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의3에서는 주택 공급의 대상으로서 ‘세대’를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여기에는 혈연·혼인 관계만이 주거를 공유하고, 따라서 독립된 주택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통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이 주거를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는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8년째 살고 있는데, 계속 1인 가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게 주택이 좁은 집밖에 없는 거죠. 사실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신청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같이 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의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 공동으로 소득이 산정된다면 다들 소득기준에도 충분히 부합할 거거든요. 그렇게 돈이 없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서로 참고 견디며 공공임대 같이 살아보자.” 하고 이 경제적 조건을 헤쳐 가며 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법적 가족만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신청하거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1회차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참여자 사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이 너무 높고 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은 적음. 2인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주택에서 친구와 둘이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동성의 혈연가족만 같이 살 수 있는 것 같아 신청을 포기함.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1. 정부 주거 정책·서비스 이용에서 차별 경험 문항 답변

주택 공급 정책이 혼인·혈연관계의 가족만을 공동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는 일인가구가 아니거나, 일인가구로 살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공공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법률혼 관계이거나 혈연관계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밖의 관계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따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나마도 일인가구 대상 정책은 ‘법적 가족’ 대상의 정책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가령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제도의 경우, 법률혼 관계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전체 공급 물량에서 일인가구 청년 대상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공급되는 주택의 질 역시 일인가구 대상은 넓이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주택 관련 신혼부부 대출이나 특별공급, 청약가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주택 마련은 꿈도 못 꾸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다 해도 1인 가구로만 인정이 되어서 같이 살 공간이 안 된다. 심지어 민간에서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도 차별을 받으니 막막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1. 정부 주거 정책·서비스 이용에서 차별 경험 문항 답변

‘법적 가족’ 외 가족이 주택을 구매하여 함께 살고자 해도, 주택 분양 제도

역시 제도 수립과정에서 법률혼과 혈연관계의 가족만을 우선적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주택청약제도에서는 법률혼 관계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특별공급도 기혼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가 신혼부부 특공과 중복 특혜라는 점 등이 문제제기가 되어 2021년 11월에서야 비혼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또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법률혼 관계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유리한 주택금융상품이 지원되고 있어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2) 복지와 돌봄 지원 제도에서의 소외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들이 서로에게 마음 쓰고 돌보고자 하는 요구 또한 제도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보편적 돌봄 체계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마련된 소수의 제도들은 모두 그 대상으로 ‘법적 가족’만을 상정하고 있다.

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족돌봄휴직 규정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 한정된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법적 가족’인 자녀 또는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운영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서의 가족 범위 역시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족상담지원서비스와 교육 등도 ‘법적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동성 파트너는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직장에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파트너가 아파서 병원을 가고 돌봄이 필요할 때도 저는 법정 가족돌봄휴직은 커녕, 단기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없어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법적 가족’ 밖의 돌봄 경험을 나누는 집담회에 참여한 이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돌봄 지원 제도에 대하여 이용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런 것이 존재하는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이들은 아무런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오직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여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돌봄 과정에서의 소진과 고용의 단절 등 위험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3) 노동자 복지에서의 차별

‘법적 가족’ 밖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동 제도에 있어서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에 관한 노동자에 대한 사내 복지를 규정하는 기업의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률상 가족 규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안) (2022.05.24. 게시)

제6장 휴일·휴가

제37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10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특히, 대다수 기업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취업규칙에 따라 취업규칙을 정해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취업규칙은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한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에 대하여 유급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것을 제시하는 등 혼인·혈연 외 다양한 가족 실천을 고려하지 못 하는 양상을 보인다.

법적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부모상 시에 각종 사내 복지혜택이 있는데, 법적 배우자가 아니어서 동거인의 부친상에 공공부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4. 정부 복지 정책·서비스 이용에서 차별 경험 문항 답변

동거하고 있던 파트너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밤도 새고 슬픔에 잠겨 정상 업무가 가능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개인휴가는 우선순위에 밀려 갑자기 쓸 수 없다고 하여 장례식장도 저녁에나 갈 수 있었습니다.

〈내 직장의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 설문조사 답변

이에 따라,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은 직장에서 경조사휴가, 경조사지원금, 가족수당 등 가족에 관한 각종 사내 복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일상 속 차별로 인식하고 있었다.

3. 혼인·혈연 중심 가족 관념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

사회적 통념이 제도를 만들고, 통념에 따른 차별적 제도는 다시 사회구성원의 통념을 강화한다. 가족을 혼인·혈연·입양 관계에 한정하는 법률상 규정은, 공적 제도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차별과 혐오를 야기하고 있다.

1) 혼인·혈연관계를 우선하는 관행으로 인한 소외

혼인·혈연에 기반한 '법적 가족' 관계를 이루어야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제도 안에서, '법적 가족' 관계의 권위는 점점 더 높아진다.

동거인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관계를 묻는 질문에) ‘친구예요.’ 말하니까 ‘따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게다가 (동거인이) 부모와 절연을 했는데, 부모한테 연락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던 부모님이 새벽에 올라오셔서 혼돈의 상황이...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3회차
“서로 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참여자 사례

동거인이 입원해서 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받아야 했는데, 타인이 받으러 간다고 위임장을 썼음에도 법적 보호자가 방문해야 한다고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당했습니다.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5. 정부 행정 및 제도 이용에서 차별 경험 문항 답변

이에 따라, ‘법적 가족’을 우선하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법적 가족’을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우위에 두거나,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태도로 인한 차별이 나타나기도 했다.

2) ‘정상가족’ 통념에 의한 혐오

법률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통념이 강화되면, ‘법적 가족’ 밖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편견과 혐오 또한 따라서 강화된다.

제 직장은 동성 파트너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에도 기존 가족휴가 제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과 증명을 요구받았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혼인 신고를 못 하는데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지 어떻게 아느냐’, ‘혼인을 반복하며 휴가 제도를 악용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등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이성훈이 혼인 신고 진행 유무, 결혼식 진행 유무로 관계의 진실함을 의심받지 않는 것과 다르게요.

〈내 직장의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 설문조사 답변

제가 수술을 했을 때 돌봐준 사람이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겪은 어려움은 끊임없이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 입원실에서 둘은 무슨 사이냐 그런 걸 묻

는다거나.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원가족에게도 끊임없이, 제 동거인과 다른 가족들은 저의 돌봄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속 우리의 관계를 어필하는 활동을 해야 했거든요.”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3회차
“서로 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참여자 사례

사실혼 배우자인 동거인이 2년째 투병하고 있어서 병원에 함께 가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보호자로 등록하는데 항상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은 의사한테 의료 과실에 대해 항의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의하는 제게 의사가 ‘그런데 관계가 배우자냐’ 이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과실에 대해 사과하고 넘어가고 나서도, 의사가 치료에 관해 설명하면서 “치료 방식을 A로 할지, B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 ‘가족’하고 잘 상의해보세요.” 나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똑딱똑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1회차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참여자 사례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편견과 혐오로 인한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관계의 목적과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부당하고 불필요한 관계의 증명을 계속해야 하거나,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따른 혐오표현을 마주하기도 했다.

IV. 나가며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관념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본 발표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지금의 한국 사회 현실은 혼인·혈연 관계를 넘어선 다양한 가족 실천의 제도적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가족’ 통념에 근거하여 혼인·혈연 관계의 가족을 기본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사회 체계는, 사회 구성원의 생계와 돌봄의 책임을 ‘법적 가족’에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가장’이 아닌 가족 구성원과 ‘법적 가족’ 밖의 존재들을 시민적 권리로부터 배제한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평등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는 현재 혼인 및 출생이 급감하고 일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급격한 인구·가족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혼인·혈연에 국한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향하며, 실천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수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혼인·혈연·입양 관계에 한정된 가족 규정은 더 이상 실제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은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은 함께 살며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돌보는 관계를 제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주거, 돌봄, 노동, 가계, 상속 등 가족으로서 수행하는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인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서로를 돌보며, 때로는 서로를 애도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또한 ‘법적 가족’만을 대상으로 상정하여 설계하고 운영되는 사회 제도는,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을 사회안전망의 바깥으로 밀어내며 이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법·제도상의 가족 규정이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은 일상의 다양한 국면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관념을 재생산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혼인·혈연·입양을 가족의 구성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개선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은, 국가가 가족을 특정한 형태에 제한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법적 가족’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온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 각자의 취향과 필요, 가치관에 따라 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지향과 실천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발제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협소한 '가족' 규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법으로

이근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변호사)

〈목차〉

1. 들어가며
2.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 정의 등에 대한 개정 논의
 - 가. 2000년대
 - (1) 개정 입법안 발의 현황
 -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5. 12. 여성가족부)
 - 나. 2010년대
 - (1) 개정 입법안 발의 현황
 - (2) 참고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 및 논의 시작(2014)
 - 다. 2020년대
 - (1) 개정 입법안 발의 현황
 -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3. 다변화된 가족 및 관련 정책
 - 가. 다변화된 가족 - 혼인과 혈연 이외의 가족 형태 ‘선택’, 1인 가구의 보편화
 - 나. 관련 정책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4. 나오며

1. 들어가며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가족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가족의 욕구를 사회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 2. 제정되었다. 법 제정 과정에서 가정관리학계, 사회복지학계, 여성계 등 여러 집단이 가족의 정의, 가족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못하였다. 이후 2005. 6. 22.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내포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회의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정부부처의 관련 연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 제정 직후부터 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족의 범위가 협소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혼, 위탁가정 등 혼인과 혈연 외로 묶인 관계를 가족으로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효하고, ‘혼인과 혈연 외로 묶인 관계’의 종류도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인구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의 개념 등에 대한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한 뒤, 최근 대두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를 반영한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 개념 등에 대한 개정 논의

가. 2000년대

(1) 개정 입법안 발의 현황

2004. 2. 9. 제정되어 2005. 1. 1. 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가정

기본법 상의 ‘가족’ 정의에 대하여는 17대 국회(2004~2008)에서부터 여러 건의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가) 가족지원기본법안(발의자: 장향숙의원 등 29인)

- 발의연월일: 2005. 6. 28
- 제안 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형태를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기반하여 상정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 주요 내용
 -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는 공동체로 하되,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는 이 법에 따른 가족으로 봄(안 제2조).
 -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기존 법안 중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 등 삭제. 단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은 현행 유지 및 보완.

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자: 이재오의원 등 10인)

- 발의연월일: 2006. 2. 13.
- 제안 이유: 이 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적용대상인 가족 및 가정이 혼인·혈연·입양이라는 관계를 기초로 함으로써 이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하여 차별의식·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가족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예방, 교육·연구의 진흥 및 가정의례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9조 및 제29조 삭제).

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발의자: 김현미의원 등 15인)

- 발의연월일: 2006. 2. 13.
- 제안 이유: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에 적합하게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외에도 사실 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를 포함 하도록 수정(안 제3조제1호).
 - 기존 법안 중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 등 삭제. 단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은 현행 유지 및 보완.

라) 평등가족기본법안(발의자: 진수희의원 등 22인)

- 발의연월일: 2006. 3. 2.
- 제안 이유: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하는 한편, 헌법에서 보장된 가족구성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시책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유지함으로써 가족구성원 및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에 의하여 결합하거나 동거하는 공동

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체로 함(안 제3조).

-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기존 법안 중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 등 삭제.

[개정안 주요 내용 검토]

	기존 법안	장향숙의원 안	이재오의원 안	김현미의원 안	진수희의원 안
법명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지원기 본법	건강가정기 본법	가족정책기 본법	평등가족기 본법
목적 (제1조)	건강가정 구현	- 성평등 하 고 민주적 인 가족공 동체의 형 성과 발전 - 가족구성 원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행 복한 가정 생활의 추 구와 가정 복지의 증 진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 의 형성과 발전 - 가족구성 원의 삶의 질 향상	- 양성평등 및 민주적 인 가족공 동체의 형 성·유지
정의 (제3조)	- 가족 ²⁾ - 가정 ³⁾ - 건강가정 ⁴⁾ - 건강가정사 업 ⁵⁾	- 가족	- 가정 - 건강가정 - 건강가정 사업 - 건강가정 정책	- 가족 - 가정 - 아동	- 가족 - 평등가족 - 가족정책 - 가족교육 사 - 가족지원 단체
혼인과 출산 (제8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가족해	① 가족구성원	삭제	삭제	현행 유지	삭제

<p>체 예방 (제9조)</p>	<p>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	--	--	--	--

개정안의 상당수가 가족의 범위를 혼인, 혈연, 입양을 넘어서 사실혼, 위탁가정 등으로 확대하거나 가족의 정의를 아예 삭제하였고, 그 외에도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제8조)와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법안이 제정될 2000년대 당시에도 혼인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가족해체 역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과 ‘가족의 변화’로 보는 시각이 공존, 대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⁶⁾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0. 10.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 2)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3) 가족구성원이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의일상적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4)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 5) 건강 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6) 「가족지원기본법안(장향숙의원대표발의),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안(이재오의원대표발의), 건강가정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대표발의), 평등가족기본법안(진수희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2006. 4. 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

1. 건강가정기본법은 특정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가족 및 가정 일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에 실재할 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형태를 수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에 적합하게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 명은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다른 기본법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 명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에서, “국민은 무의식적으로 법규정에서 정의한 가족 및 가정의 개념을 지지·옹호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판단기준과 행위규범으로 삼음으로써, 이에 벗어난 가족 및 가정형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려고 할 수 있다. (...) 오늘날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단독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혼인·혈연중심의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이를 벗어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다. 그럼에도 동 법률에서처럼 혼인·혈연·입양이라는 형태의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게 되면 이러한 가족이 정상가족이라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이에 속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가족에게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부과되어 차별을 발생시키기 쉽고, 이들의 고통과 문제의 해결이 어렵게 된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 정의가 민법의 ‘가족’ 정의와 다른 이유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가족의 정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해당 법에서 정의한 가족 범위에 속함으로써 가족으로서의 부양이나 재산상속 등 권리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가족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서 마련된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정의 역시 개별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를 필요 없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2005. 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시행한 위 연구는 각 학계 및 전문가(가정학계, 사회복지학계, 여성계, 여성학계, 법학자)의 자문을 거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냈으며, 해당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p>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가족”이라 함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가족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2. 사실혼에 기초를 둔 공동체3.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
--

위 개정안은 당시 국회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궤를 같이 하여 범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실질적인 정책대상으로서의 가족을 정의하였다. 기존 법률의 ‘가족’과 ‘가정’ 정의를 ‘가족’으로 통합하여 용어 사용의 혼동을 방지하고, ‘가족’개념에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포괄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위 개정안은 단순히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외로 확장한 것을 넘어 개별 조문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국민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제8조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자녀라는 용어가 혈연을 전제하고 있어 혈연이 아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이유로 ‘자녀양육’ 용어를 ‘아동양육’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0년대

(1) 개정입법 발의 현황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다(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 발의연월일: 2014. 4. 11.
- 제안 이유: 이 법은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독신 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 법은 가정의 구성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 이혼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

- 주요 내용
 - 법률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함.
 - 법의 기본이념을 ‘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가족의 다양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로 함(안 제2조).
 - 가족의 정의를 혼인 · 사실혼 · 혈연 · 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함(안 제3조).

- ‘건강가정’ 정의를 삭제하고, 용어를 ‘가족지원’으로 변경함.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제8조), 가족해체 예방(제9조) 규정 삭제.

- 검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2010년도 들어 1인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2000년: 15.5%, 2010년: 23.9%) 유배우자 가족 비율 역시 감소하여(2000년: 75%, 2010년: 66.6%) 혼인을 통한 가족 구성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출처: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 위 법안을 검토한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혼인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 제36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침해되었을 경우 가족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짐에도 ‘가족해체’를 사회병리현상으로만 치부하여 예방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법 제9조 삭제 역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이 법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도록 하며 동시에 가족을 둘러싼 문화,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취지이므로, 가족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한다면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가정’을 ‘가족지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이 의도치 않게 정상가족 관념을 강화시키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어 왔으므로 중립적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⁷⁾

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7)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대표발의)검토보고」(2014. 11. 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

- 발의연월일: 2018. 12. 7.
- 제안 이유: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중요해지고, 가족 형태별 지원의 필요성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음. (…)
- 주요 내용
 - 법률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함.
 - 제2조 기본이념을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가족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함.
 - 가족의 정의를 혼인 · 사실혼 · 혈연 ·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돌봄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로 하고, ‘가정’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
 - ‘건강가정’ 정의를 삭제하고, 용어를 ‘가족정책’으로 변경함.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제8조), 가족해체 예방(제9조) 규정 삭제.
- 검토

위 개정안 발의 당시, 2010년까지만 해도 2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었으나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되어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은 삶의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위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에 혼인, 혈연, 입양 외에 사실혼 관계로 맺어진 동거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비혼동거가구 및 다수가 모여사는 생활공동체의 경우 여전히 제외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한편 위 개정안에서는 기존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가족’으로 통합하여,

‘가족’이 가족구성원 간 상호 부양이 이루어지는 생활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가짐을 명문화하였다.

(2) 참고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안)」 초안 작성 및 논의 시작 (2014)

익히 ‘생활동반자법’이라고 알려진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안)」은 2014년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성별과 관계없이 생활동반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반발을 샀고, 현재까지 발의가 되지 않고 있다.

생활동반자법 초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동거 · 부양 · 협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동거가 아닌 상호 부양의무를 지는 관계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상호 돌봄과 부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법에서도 생활동반자 조항을 신설하여야 하므로, 관련 개별법 개정안 역시 논의된 바 있다.⁸⁾ 향후 생활동반자법이 발의가 되려면, 아래 법안 외에도 가족 단위로 이행되는 복지제도 등을 규정한 법에서 ‘생활동반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각 개별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의 범위에 생활동반자 추가(안 제5조).
- 의료법: 의료기록열람권자에 생활동반자 추가(안 제17조, 제21조).
- 가정폭력처벌법: 가정구성원의 범위 등에 생활동반자 추가(안 제2조 등).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커플 가구’의 존재와 권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족구성권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세대를 거듭할 수록 굳게 자리잡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도 생계를 공유하는 이른바 비혼 동거 가구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생겨나고 있으므로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에 공감하며 이를

8) 「새로운가족,제도의모색」(2014. 7. 3.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진선미의원실주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2020년대

(1) 개정입법 발의 현황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중 제3조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안은 남인순의원과 정춘숙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중 남인순의원안의 경우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과 겹치는 내용도 있고,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다. 일례로, 19대 국회 개정안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 외에 ‘사실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를 추가하여 가족에 대한 정의 조항(제3조)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21대 국회 법안에서는 가족에 대한 정의 조항(제3조)을 아예 삭제하였다.

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6인)

- 발의연월일: 2020. 9. 1.
- 제안 이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 평등한 가족관계 강조,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법률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 제2조 기본이념을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가족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20대 국회 개정안과 동일).
 - ‘가족’, ‘건강가정’ 정의 삭제.
 -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독립적 용어로 변경.
 - ‘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변경.

- 제8조제1항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삭제, 제9조(가족해체 예방) 삭제.
- 제31조 제목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을 ‘이혼 전 · 후 가족지원’으로 변경.

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 발의연월일: 2020. 11. 2.
- 제안 이유: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가족환경 변화 반영, 가족정책 추진 체계 강화.
- 주요 내용
 - 법률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 제2조(기본이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가족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
 - ‘가족’ ‘가정’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 정의 삭제.
 -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 용어로 변경.
 - ‘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변경.
 - 제9조(가족해체 예방) 삭제.
 - 제21조 제4항 ‘미혼모가정’ 을 ‘미혼모 · 부가족’ 으로 변경.
 - 제31조 제목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을 ‘이혼 전 · 후 가족지원’으로 변경.
 - 제32조 ‘건강가정교육’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배우자 및 부모의 역할 등에 필요한 가족교육과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변경.
 - 제34조의2제7항제5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

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변경.

[개정안 주요 내용 검토]

	현행	정춘숙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제명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
제 1 조 (목적)	- 건강가정 구현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제 2 조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증하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함	- 현행유지 및 보완 (제2항 신설)- 제2항: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함	-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함(=정춘숙의원안 제2조제2항)
제 3 조 (정의)	1. 가족: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2. 가정: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2의2. 1인가구: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	제3조 전체 삭제	- 가족, 건강가정 삭제 - “건강가정사업”을 “가족지원사업”으로 수정

	<p>3. 건강가정: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p> <p>4.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 저해하는 문제 예방, 해결 위한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정기능 강화 위한 사업</p>		
제 8 조 (혼인과 출산)	<p>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 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 현행 유지(?)	- 제1항 삭제 - 제2항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항으로 이동, 내용 현행 유지
제 9 조 (가족해체 예방)	<p>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p>	삭제	삭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이혼예 방 및 이혼가 정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 제목을 '이혼 전 •후 가족지원'으로 변경 - 내용은 현행 유지	- 제목을 '이혼 전 •후 가족지원'으로 변경 - 내용은 현행 유지

21대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으나(2021. 5. 6., 2021. 6. 28.) 여야간 치열한 다툼으로 세부적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전면적인 재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남인순의원안, 정춘숙의원안 모두 가족 정의 규정(제3조제1호)을 삭제하였는데, 위 각 법안을 검토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법무부는 가족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가정의 정의를 통합하여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⁹⁾ 따라서 추후 추가적인 심사 및 논의가 진행된다면 '가족'과 '가정' 정의를 통합하여 '가족'으로 일원화한 2005 여성가족부(한국여성개발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20대 국회 남인순의원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개정안 모두 17대 국회 개정안부터 이어져온 대로 제9조(가족해체

9)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대표발의)검토보고」(2020. 12. 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

예방)를 삭제하였으며, 나아가 이혼에 대하여도 ‘이혼예방’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이혼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을 일괄적으로 규제, 예방하는 것은 헌법 제36조가 규정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가족제도는 헌법의 상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등(병합) 결정 참조] 개인의 존엄성,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향유하기 어려운 가족에 대해서도 이혼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은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6.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취지로 1)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각각 권고하였다.

국회의장에게,

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 권고와 관련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동성 커플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적 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사회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 측면은 물론 의료문제, 가정폭력 상황 등 생활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36조, UN 자유권규약(제2조 제1항, 제26조), UN

사회권규약(제2조 제2항) 등 국제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을 법적 기준으로 하여 성소수자 차별 실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다수 국민의 긍정적 인식, 동성혼 및 동반자관계를 규정한 해외 법제 현황을 검토하고,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 법률 제정 및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2022년 권고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직접 언급하는 등 법률혼 외의 파트너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그 이유는 물론 위 권고가 성소수자 커플들의 인권위 진정에 따른 권고이기 때문이겠으나, 최근 여론조사(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여성가족부)에서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에 이를 정도로 혼인 이외의 결합 형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현상 역시 위 권고의 근거로 삼고 있다.

3. 다변화된 가족 및 관련 정책

가. 다변화된 가족 - 혼인과 혈연 이외의 가족 형태 ‘선택’, 1인가구의 보편화

현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된 <2020년 가족실태조사>는 2015년 까지의 가족실태조사와 달리 1인 가구 생활 실태에 대한 별도의 문항을 개발하고, 가족구성원 범주에 ‘비혈연 동거인’을 포함하였으며, 비혼동거 가족 규모 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혼인상태 관련 문항에 혼인신고 여부와 혼인신고 계획을 추가하였다.

** 2018. 1. 16. 신설, 2018. 7. 17.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제2항¹⁰⁾에 따라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최초로 1인가구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다.

10)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 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개인과가족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건강가정구현및가정문제예방등을위한서비스의욕구와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3년마다가족실태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라 가족지원의 대상에 '1인가구'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취지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제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혼인과 혈연 외의 '주거와 생활을 같이 하는 비혼동거가구' 역시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정책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0년대 들어 1인가구는 증가 추세를 넘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이제는 굳이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증가) 미디어 등을 통해 쉽게 체감할 수 있다. 반면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되었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1인가구 보다 비중이 낮아졌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유는 '경제적 이유'(31%),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8.9%),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18.6%)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30-50대가 경제적 이유를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달리 60대 이상은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가 42.1%로 가장 많았다. 동거 가구로서의 어려움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가 27.2%로 뒤를 이었다.

비혼동거와 관련하여, 최근 여론조사(2022, 한국리서치)에서는 주 결혼 연령대인 20-30대의 경우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비혼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부정적인 비율보다 더욱 높다는 결과가 발견되기도 했다(20대 남성 61%, 20대 여성 63%, 30대 남성 58%, 30대 여성 62%가 결혼 전제하지 않은 비혼동거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답함, 아래 표 참조).

나. 가족의 다양성 관련 정책 - 제 4 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위 : %)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비혼동거에 대한 인식: 긍정적 43%, 부정적 44%

긍정적이다 43	부정적이다 44	모르겠다 13
-------------	-------------	------------

구분	사례수(명)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3	44	13	100	
연령	18~29세	(173)	62	20	18	100
	30~39세	(152)	60	20	20	100
	40~49세	(184)	50	34	16	100
	50~59세	(195)	33	55	11	100
	60세 이상	(296)	24	68	8	100
성별 X 연령대	20대 남성	(91)	61	17	22	100
	20대 여성	(82)	63	23	14	100
	30대 남성	(78)	58	22	20	100
	30대 여성	(74)	62	19	19	100
	40대 남성	(94)	55	33	12	100
	40대 여성	(90)	46	35	20	100
	50대 남성	(99)	38	56	7	100
	50대 여성	(96)	29	55	16	100
	60대 이상 남성	(135)	27	68	5	100
	60대 이상 여성	(161)	22	69	9	100

질문: 귀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혈연관계의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긍정적이다(매우 긍정적이다+긍정적인 편이다), 부정적이다(매우 부정적이다+부정적인 편이다)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1.7. ~ 1.10.

정부(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2025)은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기치 하에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정책 과제로 발표했다. 이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확장되지 못하여 정책 대상 확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며 제4차 계획에서 ‘가족 다양성 인정’을 목표로 내건 것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발표한 가족정책 중 하나가 ‘가족의 개념 확대 등 법령 제·개정’(담당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으로,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할 것을 직접적인 과제로 언급하고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제에 관하여 법 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했다(아래).

□ 가족 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생활영역에서 혼인·혈연가족 위주의 관행·문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겪는 불편 사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논의 추진(여성가족부)
 - *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TF 구성·운영 검토
-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 추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인 및 관련 법·윤리·의학·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 논의
 - 남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사항*, 정자 공여자의 지위 및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 *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21.상반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개정 필요성 검토

□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 활용 지원**(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언·신탁제도 등 발굴·홍보(여성가족부, 법무부)
 - 재산 등 권리관계 명시, 분쟁해결 방안 등 안내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 자율적인 재산약정 계약서, 유언장 작성, 유언대용신탁* 등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추진
 - *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망 후 재산을 수익하게 할 수 있는 제도(신탁법 제59조)
 - 대안적 가족 공동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의 유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법상 유언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검토 및 논의 추진(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법률혼·혈연 이외의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에 대해 가족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관계의 정의 및 권리보호의 내용, 당사자 간 관계 성립과 해소, 인적·재산적 효력, 관계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가족돌봄지원 제도, 피부양자·유족범위 등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하는 가족 관계를 포괄 하도록 중장기적 제도 개선 검토 및 논의
 - * 현행 유족급여·보상 등 관련 각종 개별 법률(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피부양자·유족 범위를 '사실혼' 관계까지 보호하며, 공공 주거 지원 관련 법령 및 정책(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상의 각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에서 '법률혼' 중심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82 조(유족보상)

-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 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8 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 82 조제 2 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 **고용보험법**

제 57 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② 생략

또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갈수록 결혼과 출산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을 분석 및 파악한 뒤(아래 시나리오 참조), 가족 유형의 확대와 보편적 가족 서비스(경제적 지원, 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시나리오>



김영란 외(2019). 저출산 사회 전환을 위한 가족다양성 포용 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연구

현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사업(제21조~제33조¹¹⁾ 이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 및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지원사항에서 배제되는 구조이다. 건강가정사업은 건강, 주거, 경제생활, 가정 폭력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일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므로, 현행 건강가정지원법상의 '가족' 정의를

11) ¹¹ 제21조(가정에대한지원) ①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정이원활한기능을수행하도록지원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가족구성원의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2. 소득보장등경제생활의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 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해가·폭력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

③(생략)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혼과 혈연 외의 대안적 관계로 맺어져 상호 부양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가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4. 나오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혼, 혈연 중심의 경직되고 협소한 가족 개념 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적되어 온 문제다. 가족의 형태는 끊임없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의 ‘가족실태조사’에서도 1인가구와 비혼동거가구를 파악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 법망 테두리 바깥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 법망 내에서 지원을 받는 시민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실질적인 ‘가족’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이 꾸려가는 공동체와 그 안의 개인의 삶을 존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 1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배제와 소외 없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위한 기본법으로 재탄생해야¹²⁾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 본 토론문은 토론자의 개인 견해이며, 필자의 2021.3.25.자 오마이뉴스 기고문 “건강가정기본법이 배제하는 다양한 가족들”(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00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접속일 2022.9.25.)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혈연과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에서 다양한 관계와 가족 구성으로 삶을 함께 하는 움직임과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¹³⁾에 의하면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9.8% (-2만 1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년 대비 친족가구(-50천 가구, -0.4%)는 감소한 반면, 1인가구(522천 가구, 7.9%), 비친족가구(49천 가구, 11.6%)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전년 대비 1, 2인 가구는 증가하였으며, 3인 이상 가구는 감소하였다¹⁵⁾.

이처럼 가족은 그 형태와 구성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하는 가족정책의 근거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가족의 현실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만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3) 통계청(2022.3.17.자 보도자료), 2021년 혼인·이혼 통계, 1면.

14) 통계청(2022.7.28.자 보도자료),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등록센서스 방식>, 37면.

15) 통계청(2022.7.28.자 보도자료),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등록센서스 방식>, 40면.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정작 가족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들은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본다.

우리 주변에 노년의 삶을 함께하는 고령층 커플들은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들 황혼의 동거 가족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가족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들은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고, 사실혼·비혼동거 가족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황혼의 재혼·사실혼동거 가족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을 위한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 법적 근거는 없다.

최근 아동학대 등 이슈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양육되는 위탁 가족의 경우 가족정책을 통한 상담이나 부모교육 등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탁가족은 입양을 하지 않는 한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탁가족에서 돌봄과 양육의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이 아니며, 이들을 위한 가족정책을 마련할 건강가정기본법상 법적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이 사실혼·비혼동거 가족, 위탁가정 뿐 아니라 그룹홈, 돌봄공동체, 주거공동체 등 생계, 돌봄, 주거를 함께 하는 다양한 가족들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가족서비스를 전달할 건강가정기본법상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혼자의 삶에서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생활하고자 함께 하는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은 가족정책에서 배제된다. 1인 가구와 혈연·법률혼 정상가족 사이의 통계로 잡히지도 않는 사실상의 다양한 가족들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정의가 오히려 가족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5년 "동 법률상의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가정 개념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형태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협소한 가족개념에서 그때그때 특정 유형의 가족을 하나씩 덧붙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 가족을 유형화한 명칭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차별적일 수 있으며,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가족들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명에서부터 "건강"가정을 표방하고 있다. 법의 목적을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정보를 검색해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외에 "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본법"은 '건강검진기본법' 밖에 없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의 "건강"은 비유적이거나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 형용사 표현이 아닌, 해석상 명확성을 가진 명사로서 말 그대로 당해 기본법의 정책 영역인 "건강검진"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기본법"의 명칭을 가지는 법령 중, 법제의 해석에 있어 다의적인 형용사적 표현을 법률명에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200여 개 기본법령 중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유일하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의 더 큰 문제는 법 규정의 결과로서 개념상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도출되고, 법에서 지향하는 건강가정의 개념에서 벗어난 가족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구현"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의 하나로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경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 표현은 이혼 한부모가족 등을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가족으로 문제시하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당사자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노력을 의무로까지 부과하면서도, 정작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와 가족지원에 관련한 규정은 미약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권고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률명에 대해서, "동

법률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의 전형적 형태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와 그 사이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유형의 가족형태를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보는 것으로, 법률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다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본법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으로서 특정 가치를 계도하는 것이 아닌,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그에 걸맞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배제와 소외 없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정책을 위한 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가족정책을 철저히 필요로 하는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론 2

혈연/제도적/이성애규범적 가족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없는 법 개정의 한계

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24일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정안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를 그대로 뒀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건강가정’ 용어에 대해서도 존치 의견을 밝히며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 기반의 대안적 관계(비혼·노년 동거 등)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던 여가부가 정책 방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여가부는 후속적으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가족’ 정의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여가부의 입장이 정권의 변화 때문이라고 여길 수만은 없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동성파트너십과 연관되어 이야기 되는 것이 ‘소모적 논쟁’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족의 변화를 이성애중심적 관계로 한정짓고자 했던 여가부의 일관적 태도였다. 여가부는 2015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차별금지규정을 놓고 동성인 경우도 포함해서 해석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고¹⁶⁾

16) 제331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15년2월23일) 회의록 38페이지

2019년 <가족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는 토론을 맡기로 했던 가족구성권연구소에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빼라”¹⁷⁾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토론자가 참석을 거부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가족다양성을 언급하면서 혼인·혈연 외의 가족을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동거사실혼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등으로 언급하였을 뿐 성소수자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동성파트너십을 가족의 변화나 돌봄, 친밀성의 변화에서 철저히 배제하려는 의도는 결혼-출산-양육-돌봄으로 이어지는 이성애중심적 생애주기 정상성을 유지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목적에 내재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출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국민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극복 중심의 「건강가정기본법」의 관점은 제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와 제4조 2항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서의 시민 상을 이상적인 시민 상으로 만들어왔다. 혼인을 통하지 않는 재생산,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재생산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낙인찍고 차별과 불평등의 영역에 남겨져왔다. 현재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혼, (이성애)비혼동거가족이 경험해온 차별과 불평등 역시 이러한 가족 형태를 새로운 돌봄

“○남인순 위원 : 앞을 즐기고 ‘가족의 다양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성인 경우에도……

○진선미 위원 : 그것은 애초에 거기 자체에서 배제가 됩니다, 가족의 개념에서.

○남인순 위원 : 가족 구성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희는 여기를 많이 알고 있지 만……”

17) <“가족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 개선과제” 토론회에 가족구성권연구소가 불참하는 이유에 대한 입장문>

<https://www.facebook.com/familyequalityrights/posts/512227866031630>

과 친밀성의 변화로 포착하지 않고 ‘건강가정’에 못미치는 불건강한 가정으로 임시적인 상태이자 해결되어야 할 ‘위기가족’으로 해석하며 가족의 위계를 통해 재생산 과정의 이성애정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도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서로를 돌보고, 친밀한 유대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몇 가지 가족의 유형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주거/돌봄/노동/안전/죽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을 만들어온 이성애규범적 가족중심의 패러다임을 폐기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률 1,400여 개 조항 중 240여개의 법률에서 가족이 언급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성격은 ‘보훈/보상/포상, 재난/안전, 외교/안보/병역, 공공·민간영역의 선거 규제, 사회보장(보험/급여수급), 사회보장(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죽음/질병, 근로조건 규제, 교육, 가족관계 내 규제(가정폭력 등), 수형, 조세/각종세법, 토지/주택, 행정/사법 등으로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민법 제779조는 개인이 누구와 상호의존하며 서로의 취약성을 돌보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규정하여 다양한 관계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위법으로 드러났다. 2021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외 24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하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을 상정과 동시에 심사보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민법 제779조를 반대 의견의 근거로 등장했다.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에서 가족이라는 용어가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는 상위법령, 민법 제77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조례안이 심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인이나 혈연과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는 시민들의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만이 아니라 민법 제779조 역시 폐지되어야 하며 개별 법률과 조례에서 그 취지에 따라 보호하는 관계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를 통해 포착된 비친족 가구 수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을 벗어난 가족, 혈연·혼인이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나 민우회의 이번 집담회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꼭 주거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밥을 같이 먹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등 일상적인 상호 돌봄을 주고 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취약해지는 시기에 돌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시민사회의 친밀성의 변동은 이미 ‘일어난’ 현실이며 친밀성은 꼭 하나의 관계나 일대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한 관계가 평생에 걸쳐서 폐쇄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환상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며 다원화된 돌봄의 네트워크는 돌봄의 권리를 나눠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 소운(2021)의 연구에 따르면 법적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석하는 장사업무지침이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법 제2조 16호(연고자의 정의)에 “사.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자”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관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고자의 정의를 법률에서 확장하는 경우 “장례희망의사와는 무관한 연고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새롭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장례주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가족’으로서 (상속인의 권리를 비롯하여)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라고 해석된다. 돌봄을 가족에 일임하고 이성애 결혼, 혈연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복지 부담을 줄이려 하는 국가의 관성은 제도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민법 제779조의 폐지, 개별법 상 내가 지정한 1인 규정의 신설, 동성결합/생활동반자관계/사회적가족의 인정 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폐지를 넘어서는 다양한 변화를 촉구해왔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이성애규범적 가족 정상성을 가족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던 지난 시간을 정말 ‘과거’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보호·지원’할 가치가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것을 멈추고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관계를 인정하고 상호돌봄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삼아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표는 정당하지도 실현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권리중심의 기본법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 한계〉, 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한국사회 무연고 사망자의 상주되기와 장례실천을 둘러싼 가족정치〉, 이소윤, 2021

토론 3

가족, 선택하고 돌볼 권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에 따른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혈연과 법률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의 전형(stereotype)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러한 ‘가족 정의’는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바로 그 이유가 가족의 화합과 친밀성을 언제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혼에 의한 전통적 가족관계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가족해체 현상은 유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족의 친밀성, 그리고 친밀한 자들의 집합체인 가족이라는 개념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가족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가족 다양성의 증가다. ‘가족’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가족유형이 아니다. 1인가구의 가파른 증가 속에서 ‘정상가족’의 의미와 실체는 멀어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책 방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¹⁹⁾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역행하는 정책 번복인 셈이다

표 1 | 비친족가구 수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친족가구 수	269,444	308,659	340,367	386,968	423,459	472,660
비친족가구 원	583,438	673,784	746,930	840,936	912,878	1,015,100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 (최종 검색일: 2022.9.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3

18) 여성가족부,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2021.

19) 아시아경제(2022.9.24.), 「'가족 다양성' 입장 뒤집은 여가부... '사실혼·동거' 포함 원점으로」.

다양한 가족의 등장에 따른 가족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혈연과 법률혼에 의한 관계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적인 친밀성 속에서 일상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협소한 가족 개념은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 바탕을 둔 돌봄과 보살핌을 공유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방문 시 요청되는 ‘보호자 동의’는 법률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²⁰⁾ 가족해체 등으로 법률상 가족과 연락과 교류가 없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로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 법률에 의해 가족으로 인지되지 못하지만 서로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 보호종료청소년 등 법률상 가족으로 칭할 자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의 가족 돌봄 관련 법률 규정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된다.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동의

「의료법」 제24조의2²¹⁾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 본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보호자 동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수술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받는 것으로, 현행법 상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보호자에 대한 법적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²²⁾ 더 나아가 수술이 필

20) 김진욱, 「동거인도 배우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날이 올까요?」, 『뉴시스』, 2020.01.24.

21) 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다만 「의료법」 제21조의2에서 진료기록의 송부 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2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하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이 보호자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수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2019, p.49.

요한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요구하여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다. 「의료법」 제15조제1항²³⁾에 따른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89조²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²⁵⁾

그러나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 본인이 동의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⁶⁾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위법으로 단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고령 및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사유로 인해 의료진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누군가와 함께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역할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²⁷⁾ 따라서 ‘보호자’의 범주를 확장하는 방안 역시 검토를 요한다. 직계가족 뿐 아니라 방계혈족, 나아가 법률상의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동거인 등 환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호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요국에서도 의료진료에 대한 동의권은 환자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대리인이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평소 생각과 신념을 잘 알고 있는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라는 요건이면 충분하다. 호주 빅토리아주, 영국의 18세 이상인 자는 자신을 대

23)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4)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5)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6) 안지호, 「아플 때 더 서러운 1인 가구…병원 동행 등 돌봄 정책 확대해야」, 『1코노미뉴스』, 2021.09.13.

27) 김수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20(2), 대한의료법학회, 2019.

신하여 의료결정을 내릴 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사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의료 관련 의사결정 대리인은 건강돌봄대리인(Health Care Agent)이라 칭한다.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돌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뉴욕주의 「Public Health Law」 § 2965에서는 건강돌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법정대리인, 배우자, 동거인, 부모, 18세 이상의 형제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구(a close friend)로 예시하고 있다.²⁸⁾ 건강돌봄대리인은 의료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평소 신념과 바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신뢰 깊은 자이면 그 자격이 충분하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건강 관련 기관(health care facility) 이해관계자, 즉 기관 운영자나 종사자(가족이라면 예외)만을 건강돌봄대리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택된 가족과 가족 돌봄

“선택된 가족(chosen family)” 개념은 혈연이나 법률혼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나 마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밀한 자를 말한다.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유연한 개념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성정체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비난·소외되기 쉬웠던 이들이 혈연과 법률 관계가 아닌 실제적인 친분을 나누고 있는 자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선택된 가족” 개념이 근로자 휴가제도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베트남전쟁이 끝난 해인 1969년도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전사자 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방 공무원이 마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equivalent of a family relationship)를 애도하기 위해 장례에 참여할 경우, 조사휴가(funeral leav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후 “선택된 가족” 개념이 전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가족 돌봄과 관련한 법률에서다. 1993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인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고 또는 불이익에 대

28) The New York State Senate, 「Section 2965 Surrogate Decision-Making」(최종 검색일: 2022.4.29.),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PBH/2965>>

한 염려 없이 연간 12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주는 일반적인 직계가족 개념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제한되어 있다.²⁹⁾ 그러나 최근 주정부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면서 가족 개념도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가족돌봄휴가의 돌봄대상 가족을 규정하는데 있어 “선택된 가족”과 유사한 가족 개념을 포괄하면서 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의 범주를 넓힌 것이다. 2022년 4월 26일 기준 10개의 주정부와 Washington D.C.에서 유급가족의료휴가 관련 법률을 마련하였다. 이 중 메릴랜드주를 제외한 나머지 9개주와 Washington D.C.에서 등록동반자, 동거인,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등을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확인된다.

표 2 | 미국 주정부별 유급가족돌봄휴가에서의 가족 범주

구분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범주
로드아일랜드주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록동반자 , 조부모
캘리포니아주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록동반자 , 배우자의 부모
뉴저지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등록동반자 , 시민연대 파트너 , 혈연관계에 있는 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뉴욕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손자녀, 동거인 , 형제자매
워싱턴 D.C.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손자녀, 형제자매, 등록동반자
워싱턴주	자녀, 동거인 ,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록동반자의 부모 , 형제자매, 배우자, 등록동반자 , 근로자의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돌봄을 받는 자, 근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기대되는 자
매사추세츠주	배우자, 동거인 , 자녀, 부모, 배우자/ 동거인의 부모 ,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코네티컷주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혈연관계에 있는 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29) U.S. Department of Labour,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최종 검색일: 2022.5.5.), <<https://www.dol.gov/agencies/whd/laws-and-regulations/laws/fmla>>

오레곤주	배우자, 등록동반자 , 형제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 동거인 , 조부모, 손자녀, 부모, 배우자/ 등록동반자의 부모 , 혈연관계에 있는 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콜로라도주	자녀, 부모, 배우자/ 동거인의 부모 , 배우자, 동거인 , 조부모, 배우자/ 동거인의 조부모 , 손자녀, 배우자/ 동거인의 손자녀 ,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의 형제자매 ,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메릴랜드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돌봄 관련 사안에서는 가족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중한 질병을 앓는 매우 가까운 사람을 돌보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closely-related person)’는 혈연관계의 가족이나 친족을 의미하는 동시에, 말 그대로 돌봄을 받는 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즉 혈연이나 인척 관계가 없는 친구나 이웃도 포함된다.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돌봄을 받는 자의 동의와 의료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캐나다에서는 근로자가 중병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자, 또는 임종을 앞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임금의 55%를 보전해 준다. 주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CAD638(약 63만 원)이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근로자가 돌보는 대상이 반드시 가족이거나 함께 사는 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가족 돌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요건은 근로자가 돌봄을 제공하려는 자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즉 가족이란 혈연 및 법률 관계에 의한 친족 뿐 아니라 다른 친척, 그리고 마치 가족처럼 가깝고 친밀한 개인을 말한다. 개인이 가족의 자격을 부여받는 데 있어 법률이 인정하는 특정한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전망과 과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돌봄과 보살핌은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다. 누가 제공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은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돌봄 제공 장소로, 가족구성원은 가장 애정어린

돌봄 제공자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돌봄이 제공될 것이라 기대되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다양한 여건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성인이라면 으레 배우자가 있을 것이란 전제,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것이란 기대, 노인이 되면 자녀들의 정성어린 부양을 받을 것이란 가정만으로는 우리사회가 맞닥뜨린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혼인율 감소와 비혼 증가,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의 증가는 전통가족에게 기대되었던 가족 간 돌봄이 다른 방식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매우 강력한 징표들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유로 가족을 떠나고 있고, 가족으로부터 외면 받는 사람도 있으며, 가족과 단절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절실하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홀로 지내지만 느슨하게 연결된 친밀한 공동체 속에서 안정과 평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관계가 혈연과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 간 이처럼 깊은 정서적 교감과 긴밀한 유대감을 외면하고, 사회의 인정과 지원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도 될 수 없다.

다양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민법」 제799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주,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의 가족 정의에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동거인, 그리고 가족과도 같은 친밀한 자의 개념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치 가족과도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돌보고 보살피고자 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도 있다.

친밀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인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위를 나누고 가까이에서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먼 거리에 거주하고 서로의 왕래가 드문 가족, 법적 서류 관계로만 존재할 뿐 이미 단절된 가족이 있는 반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 근거를 가지지 못하지만

보살핌과 친밀성을 나누는 자들이 우리사회에 존재한다. 법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밀성과 상호 돌봄을 전제하고,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친밀한 자들의 더 긴밀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가족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법적 가족 이외의 친밀 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인지하고 지원 대상에 포괄하는 것은 향후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토론 4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여명희(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권위가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021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실시한 <성적소수자의 노후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노후를 위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에 이릅니다. 2021년 말 현재 전세계 30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나 법률혼 중심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인가구가 가장 보편적 가구 형태가 된 것을 비롯하여, 비혼동거가구, 공동체가구 등도 최근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비단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 등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족, 즉 비친족 가구가 47만2660가구로, 전년도보다 11.6% 증가했고, 가구원의 수도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비친족가구는 2016년에 26만9444가구였던 것이 2020년에는 40만 가구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7만 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의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적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더이상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는 테두리로 한정하기는 어려워졌고, 이성애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소위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도는 대폭 손을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04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현행 법률 중에서 유일하게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인권위는 2005. 10.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이라는 한정된 관계에 기초한 가족 및 가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및 가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법률명도 중립적인 명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 취지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제17대, 제19대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2020

년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혼인·혈연·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며,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더욱이 가족정책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적극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5

사회의 시선으로 살 것인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인가?

장희정 (한부모가족회한가지 공동대표)

오래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상가족, 건강한 가족, 가족해체예방이라는 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혼인한 부부중심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가족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한 것,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 다수가 중심이 되는 가족이 지금까지의 대세였다면 이제는 1인가구가 대세인 가족이라고 해야하는 것일까?

과연 정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 말일까? 세상에 정상인 가족은 있는 것일까? 가족구성으로만 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족일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정상가족이라는 구조를 누가 만든 것일까? 법으로 인간의 행복과 존엄성보다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이다. 가족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과연 몇 사람이 아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는 집이라고 대답할까? 가족이란? 사랑하고 신뢰하며 언제나 내편이 되어주고 힘들고 기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대화를 하며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할 것이다. 나에게 울타리가 되고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족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역할은 없이 가족구성원의 모습으로만 가족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족은 아니다.

한부모가 되면서 가족에 대한 편견을 온 몸으로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보면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한부모가족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상가족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쫓겨 살고 있는데 어떻게 편견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감추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선이 가족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정해 놓고 보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족이 되면서 가족의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알게 되었다. 그럼 예방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막음”이라고 사전에 정의 되어있다. 이런 가족의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져 한부모 되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통해 참고

참다가 결정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가정폭력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서도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다가 죽음의 공포를 느껴 이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 사회는 개인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제3조 3항에 보면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가정의 해체를 예방해야 하는 것일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혼과 미혼모를 선택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나와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나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가끔 가정폭력으로 인해 극단의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또한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일부 있을 것이다. 구조가 아닌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족으로 변화해야 한다.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한다.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름만 있는 아빠나 엄마는 아이들의 성장에 더 저해가 되는 요소일 뿐이다.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의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나 함께 살고자 선택을 할 때 쉽게 헤어짐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아이가 있는 사람은 이혼을 선택하기가 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용기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혼 후 수많은 비난과 어디서나 듣는 말들이 있다. 학교의 학부모로 가면 남편은 뭐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아빠(엄마)는 어디 있냐고 아이에게 묻는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가족을 이해시키기보다 가족을 소개하게 하여 자신의 가족을 노출하게 한다. 이해가 없이 진행되는 가족의 노출은 아이들로 하여금 가족의 편견을 갖게 만든다. “너는 왜 아빠가 없어?”라는 질문을 듣는다. 이 사회에 편견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한부모가 되면서 주변의 인적자원들이 축소되고 한부모 자신이 아이들에게 이혼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부모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바라볼까봐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이가 상처 받을까봐라고 말을 한다. 당사자인 한부모가 자신이 한부모가 된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차별 받을까 걱정되어서이다. 단지 이혼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서 조차 차별을 받

는다. 가족의 행사에 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이혼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집안엔 이혼은 없다’고 말한다. 나의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는 관심 밖이다. 가문의 수치,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한 우리의 문화이다. 이런 배경 역시 가족의 구조를 우선시 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곳곳에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구성원에 관한 이야기로 정해져 있다.

이 모든 편견을 만드는 것은 아동, 청소년이 아닌 기성세대들이다. 가족이 행복한지, 서로가 신뢰는 있는지, 가족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 쉼과 휴식이 되는 곳인지가 중요하기 보다.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가족은 정말로 다양해졌다. 부부중심의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1인가구, 재혼가족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가족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일까? 모두가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되어 있는 가족, 그냥 가족이란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족의 이름을 나누는 것 역시 편견을 만들어 내는 것일 수 있다. 꼭 같이 살아야 가족은 아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느끼면 가족인 것이며 1인가구라고 다른 곳에 가족이 없는건 아닐 수 있다.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는 색다른 질문이 있었다. 바로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인구총조사에서 볼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 이렇듯 가족의 형태는 늘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의 형태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가족의 첫시작은 타인인 두 사람이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할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 권리, 내가 안전할 권리, 이제는 이런 나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어떤 형태로 살던 어디에서 살던 그건 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고 시대에 맞는 가족법 안에서 살고 싶다.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 6

동성부부로서 경험하는 차별 사례

소성욱(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동성부부로서 경험하는 차별사례

▶ 일상가사대리권 침해

“설거지를 하느라 남편이 법원등기를 대신 받으려고 했는데, 누구인지, 가족이라면 어떤 가족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하던 설거지 멈추고 제가 직접 받으러 가야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런 일에서조차...”

함께 살며 발생하는 사소한 일상적인 일조차 가족으로서 인정되지 않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주거정책에서의 배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을 알아보는데, 금리가 저렴하고 대출금액이 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조건에 혼인증명서 제출 요건이 있지만 동성부부는 혼인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애초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없음.

“우리 중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온 이 공간, 가구, 흔적 등에 대해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군 것인데...”

임차인 승계권 등: 임차인(동성배우자)이 사망했을 시 임차인 승계권이 부여되지 않음. 재산은 물론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한 삶의 흔적들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위험.

▶ 의료정책에서의 소외

“제가 앓고있던 병으로 아파서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남편이 대신 약을 처방받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병원 의사선생님이 제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시스템상 필요한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해하며 설명했습니다.”

아플 때 약을 대신 처방받거나 상담 등을 병원에 요청할 수 없는 현실. 병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지만, 동성부부는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사회보장정책에서의 차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실수’라며 일방적으로 우리의 부양-피부양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 가족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실수로 가능한 일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가족으로서 부양-피부양의 관계와 그 권리를 박탈당함.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문의 및 서류제출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양-피부양자로 등록하여 2020년 2월부터 8개월동안 부양-피부양 관계를 인정받고 혜택을 누렸지만 동성부부라는 것이 기사로 알려지자마자 일방적으로 자격박탈을 통보받음.

토론 7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를 위한 가족의 범위

박진옥(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지난 9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정춘숙·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주요 사항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성가족부가 정권교체 후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던 기존 태도와도 배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 현실 반영과 차별 해소라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회 등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다변화된 가족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인구·가족구조의 변동과 다양한 가족 실천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으로 인한 법·제도·문화적 차별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정의 규정 삭제시 기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법률 명칭,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가족·가정·건강가정 등의 정의, 제8조 혼인과 출산, 제9조 가족해체 예방 조항의 개정논의를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가족의 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현 「건강가정기본법」상 실질적인 ‘가족’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에 대한 진단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의에서 벗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며, 제안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등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공영장례 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현장 단체의 입장에서 고민했던 바와 연관 지어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장례를 지원

하며 죽음과 장례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흔히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면서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는 장례와 같은 사후 사무가 반드시 수반된다. 차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죽음 이후에 사망한 고인의 장례를 할 권리는 오직 법적 연고자에게만 주어진다. 여기서 법적 연고자는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③형제자매까지만 해당한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가족 및 가구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게다가 결혼을 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온 사람,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은 사람, 가정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미혼모, 미혼부, 독거노인, 친인척이 이민 상태이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등 솔한 개인사가 존재한다. 만약 부모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동이거나 또는 한두 명 있던 형제마저 사망한다면 법적으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가 된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관계의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법적 연고자는 아니다. 이처럼 법적 연고자가 아닌 친밀한 사람이 장례를 준비하는 순간,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상실과 비통함 가운데 고인을 애도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만다.

둘째, 이뿐 아니라 법적 연고자 기준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죽음을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구분했다. 비교적 어린 나이의 죽음, 결혼하지 못한 상태의 죽음, 제사를 받을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의 죽음, 객사 및 사고사, 자살 등은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이들에 대한 장례는 치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이러한 관례에서 정상적인 죽음만 장례라는 의례를 수행했고 이 의례를 통해 정상적인 죽음은 기념되었다. 한편 비정상적인 죽음은 의례조차 없이 망각될 뿐이었다. 여기서 죽음을 기념하거나 망각하는 데 장례라는 죽음의례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 의례에서 기념하는 죽음에는 정상적인 죽음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비

공식적 의례에서 기념하는 죽음에는 비정상적인 죽음의 의미가 부여됐다.

이와 같이 의례의 수행을 통해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그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이라는 책에서 부르디외는 의례가 "의례를 거친 사람을 (...) 앞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든 그러한 의례를 거치지 않게 될 사람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하며, 그러한 효과는 "의례에 해당되는 사람과 의례와는 무관한 사람 간에 놓인 항구적인 차이를 제정하는 효과"라고 했다. 실제로 죽음의례를 살펴보면, 장례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되지 못하는 사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정상적인 죽음과 치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죽음이 나누어진다. 장례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의미가 위계화되고 그 속에서 의례 대상에 대한 포함과 배제가 이루어진다. 이때문에 죽음의례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애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죽음들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오늘날의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이 이러한 죽음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의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은 위계화된 죽음을 공고하게 하며 가속하고 있다. 즉, 애도할 권리의 범위를 한정된 결과 무연고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 뜻대로 장례'와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다행히 2020년 보건복지부는 '장사 업무 안내'에 '가족 대신 장례' 지침을 마련해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된 이후 법적 연고자가 아닌 이들도 장례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법'에서 정한 연고자가 아닌 제삼자 중에서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다음 네 가지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부부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례도 치를 수 없었다. 이제는 사실상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로 혼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부상으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즉, 법률적 가족관계는 아닌 아들이 생모를 돌봤을 경우, 그리고 실제로 혈연의 형제 관계이지만, 각기 다른 집에 입양되어 법률상으로 형제 관계가 아니어도 장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조카와 며느리 같은 친족 관계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일반상식과는 다르게 '장사법'에서는 조카와 며느리는 연고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조카와 며느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도 법으로는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치를 방법이 없었다. 네 번째는 장기적·지속적 동거·부양·돌봄 관계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장기간 지속해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도 장례를 할 수 있다. 즉 누가 봐도 가족처럼 생활했다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법률혼과 혈연 중심이다. 문제는 장사법이 명확하게 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장사업무안내' 지침을 통해 '장사법'에서 정한 '사실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을 뿐이다. 따라서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가 보장될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법률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에게만 장례 등의 사후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고자 적용의 우선순위와 적용 범위가 개정되어야 한다.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장례 등의 사후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사전에 장례 등의 사후 사무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후 사무의 최종단계로 사망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민법의 개정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구·가족구조의 변동과 다양한 가족 실천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살아 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음과 이후 장례 등의 사후 사무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이든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그 범위를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다.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발행일 : 2022.09.26.

발행인 : 한국여성민우회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성산동)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o@womenlink.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womenlink1987

트위터 @womenlink

인스타그램 @women_link

※ 본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